

한국수산물무역협회 공고 제2024-06호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758호(2024.5.9.)에 따라 2024년 마른김, 조미김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수산물무역협회 회장

2024년 5월 10일

마른김, 조미김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

제1조(목적) 본 세부요령은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758호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하 “해양수산부 공고”라 한다)에서 한국수산물무역협회(이하 “추천기관 또는 협회”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에 따라 마른 김과 조미김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의 추천 및 수입관리 등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등) 본 요령의 적용품목은 마른김과 조미김이며, 품목별 할당관세율,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적용 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3조(물량 배정 등)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추천기관은 할당관세 물량 배정을 위해 신청자격, 상세 도입기간, 업체당 배정한도물량, 할당관세 적용 추천 신청기간 등은 별도로 정하여 세부내용을 공고로 공지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은 할당관세 물량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신청자”라 한다)에게 신청물량 한도 내에서 제1항의 한계수량을 추천신청자 중 제10조의 제외대상이 아닌 자(이하 “추천대상자”라 한다)에게 선착순 배정 또는 균등비율 등의 방식으로 배정한다. 다만, 한계수량이 소진된 경우, 적용기간 또는 도입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추천을 종료한다.

③ 할당관세 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미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잔여 물량을 반납할 수 있다.

④ 추천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잔여 물량을 반납 받는 경우, 행정예 소요되

는 기간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또는 회차별 도입기간 이내에 기 추천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그 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① 추천신청자는 해당 물품의 관세청 수입신고 수리 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할당관세적용 추천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추천기관이 공지한 전자우편주소(email)으로 신청해야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시장공급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3. 선하증권(B/L, AWB) 사본 1부
4. 상업송장(Invoice) 사본 1부
5.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사본 1부
6.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1부
7. 영업신고(허가·등록)증 사본 1부
8. (영문)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9.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사본 1부
10. 사용인감계(인감증명과 사용인감이 구분된 경우)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붙임1 서식) 1부
12.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준수 및 협조 동의서(붙임2 서식) 1부
13.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 내역(excel;추천 공고문 홈페이지 첨부파일)

② 추천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신청을 한 경우에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고 제10조에 따른 제재를 한다.

③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서 및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의 수량 및 추천수량의 단위는 kg이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올림한다.

④ 추천기관의 장은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완비된 때를 해당 업체의 전자우편 접수일시로 하여 접수일시가 우선하는 순서대로 해당 서류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할당 관세물량의 추천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천기관의 근무일 2일 이내에 별지 제2-1호 또는 2-2호 서식의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교부한다.

⑤ 추천기관의 장은 전자우편 접수일시가 우선하는 순서대로 한계수량 내에서 신청물량을 배정하여 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천신청이 한계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남아있는 한계수량 범위내에서 신청물량 일부만을 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배정한다.

1. 시장공급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상 판매완료(예정)일자가 우선하는 자
2. 전자우편 접수일시가 우선한 자

제5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추천서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758호(2024.5.9))」 상 적용기한을 경과할 수 없다.

③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 원본을 첨부하여 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추천기관은 제3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서 원본과 교환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된 추천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나, 제2조의 적용기간 또는 제3조의 도입기간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 상의 할당수량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분할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은 제②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신청 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 반납) ①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추천물품의 신속통관) ①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반출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 통관하여 시장공급계획서상 판매완료(예정)일까지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②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물량의 수입통관 수리 후 5일 이내(추천기관 근무일 기준)에 해당 추천서가 적용된 수입이행실적 증빙을 추천기관이 공고한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9조(추천물품 판매실적보고 등) ① 추천신청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시장공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동 물량의 시장 공급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 공급 후 5일 이내에(추천기관 근무일 기준) 추천기관이 공고에서 공지한 전자우편 주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실적보고(excel 양식 ; 추천 공고문 홈페이지 첨부파일)
2.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출고확인서 또는 보세구역 반출완료 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사본 1부
4. 시장공급완료확인서(판매완료(확정)일 명시)(별지 제8호서식) 1부
5. 판매물량이 추천서에 따라 수입통관된 물량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③ 추천기관은 제출된 판매실적 등이 시장공급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 판매실적과 관련된 자료 및 통관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추천대상자는 할당관세적용 품목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그 내용을 추천기관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추천배제 등 제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납일이 속한 적

용기간 또는 도입기간의 나머지 기간 및 경과 다음날로부터 1년간 한국수산물무역협회가 추천하는 모든 품목의 할당관세 신청(수입대행 또는 공급계약을 포함한다)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정해진 기한까지 배정받은 물량을 95.0%(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미만 수입이행한 자 또는 정해진 기한까지 제9조에 따른 판매실적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
2. 제4조 시장공급계획을 미준수한 자
3. 제9조 판매실적 증빙자료 미제출자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한 자
4. 기타 추천물량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등 할당관세 관련 법규 및 추천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

제11조(위임) 추천기관의 장은 본 세부요령에 관련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천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할 수 있으며, 전결권자는 위임받은 사항을 해양수산부 고시, 이 세부요령에 따라 공정하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공고 시행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타사항) 본 요령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 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758호)」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 수량	추천 기관	추천 대상자	적용기간
호	소호							
1212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티부스 새티범(<i>Cichorium intybus sativum</i>)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한국수산물무역협회	실수요업체, 수입업체	2024.5.10.~2024.9.30
1212	2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1212	21	식용 2. 기타	김(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	700톤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	99	기타 5. 조제한 식용 해초류	김	0	125톤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① 신 청 인	상 호				② 수 입 자	상 호			
	주 소					주 소			
	대표성명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회사: (HP:)			전화번호		회사: (HP:)	
	팩스번호					팩스번호			
③ 신청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kg)	금 액 (USD)	수입국	수입신 고 예정일	보세구 반 예정 출일	판매 완료 예정 일	용 도	
								일반 내수용	
<p>「관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758호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을 받으려고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사)한국수산물무역협회장 귀하</p>									
첨부서류 : ① 선하증권(B/L, AWB)사본 1통 ② 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 ③ 그 밖에 추천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2-1호서식]

추천번호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회사: (HP :)	회사: (HP :)
팩 스 번 호		

◦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kg)	금 액 (USD)	수입국	수입 신고 예정 일	보 세 구 역 반출 예정일	관매 완료 (예정)일	용 도
								일반 내수용

◦ 유효기간 만료일 : 20 . . . 까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501호) 및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75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사)한국수산무역협회장 (인)

※ 본 추천서는 추천유효기간까지 사용하고, 수입신고 예정일, 보세구역 반출예정일 및 관매완료(예정)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천에서 배제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예정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2호서식]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추천조건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501호) 및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75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함.

20 년 월 일

(사)한국수산무역협회장

(인)

접수번호 :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입자					
상호								
주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회사 : (HP:)		회사 : (HP :)					
팩스번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세번부호 (HS)	품명	수량 및 단위 (kg)	금액 (USD)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	보세구 반출 예정일	판매 완료 (예정)일	용도
								일반 내수용

-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

해양수산부 공고 제5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신청일 발행분) 첨부

(사)한국수산물무역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별지 제4호서식] * 제6조 관련 문서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인)
	② 주 소									
	③ 대표성명									
④ 신청내용 : 신청사유										
⑤세번부호(HS)	⑥품명	⑦추천서 번호	⑧당초 추천량	⑨ 추천수량의 분할내용(추천량)						
				1	2	3	4	5		
<p>해양수산부 공고 제6조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적용 추천의 분할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분할사유 :</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신청일 발행분) 첨부</p> <p>(사)한국수산무역협회장 귀하</p>										
구비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 원본										

할 당 관 세 적 용 분 할 추 천 서

① 추천번호

② 상 호

③ 주 소

④ 대표성명

⑤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명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당 초 추 천 량	추천수량의 분할(추천량)				
					1	2	3	4	5

○ 유효기간 만료일 : 20 . . .까지

해양수산부 공고 제6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 추천합니다.

20 . . .

(사)한국수산무역협회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추천번호 :

시 장 공 급 계 획 서

◦ 신청물량: _____ kg

◦ 공급계획

(단위 : 개, kg, 천원)

판매완료(예정) 일자	거래업체	수 량	중 량	금 액	B/L No.

※ 신청물량 전량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판매완료(예정)일자는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금액은 생략 가능)

위 계획서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물량을 시장에 공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공급계획을 위반할 경우 김(마른김, 조미김)할당관세추천세부요령에 따른 제재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상호
대표자 (인)
주소

20 . . .

(사)한국수산물무역협회장 (인)

[별지 제7호서식]

김마른김 조미김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원료 확인서

추천신청자	
추천번호	
BL번호	
세번부호	
품명	
추천수량	
수입국	
추천서 최초 교부일	2024년 월 일
보세창고 반출기한	2024년 월 일
보세창고명	(주 소) (연락처)
전량(100%) 보세구역 반출일	2024년 월 일
<p>「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34501호) 및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758호에 따라 김(마른김, 조미김) 할당관세 적용물품을 상기와 같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추천신청자 (인)</p> <p style="text-align: right;">보세창고 대표 (인)</p> <p>(사)한국수산무역협회장 귀하</p>	

[별지 제8호서식]

추천번호 :

시 장 공 급 완 료 확 인 서

◦ 신청물량: kg

◦ 공급계획

(단위 : 개, kg, 천원)

판매완료(확정) 일자	거래업체	수 량	중 량	금 액	B/L No.

※ 신청물량 전량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판매완료(확정)일자는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금액은 생략 가능)

위 확인서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물량을 시장에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기 제출 공급계획을 위반하였을 경우 김(마른김, 조미김) 할당관세추천세부요령에 따는 제재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상호
대표자 (인)
주소

20 . . .

(사)한국수산물무역협회장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한국수산물협회는 김(마른김, 조미김) 할당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자(수입자 포함) 및 추천품목에 대한 관리
- 판매 및 가공실적 분석 및 유통실태 등 현황 파악 활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신청인(상호, 주소, 대표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입자(상호, 주소, 대표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선택항목	대리인(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판매 및 생산 실적(판매가격, 판매처, 판매량, 생산실적, 재고현황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영구

4.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제공기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감사기관
- 제3자 제공목적 : 판매실적 분석 및 유통실태 연구 활용
- 제3자 제공항목 : 신청인/수입자(상호, 주소, 대표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제3자 제공기관의 보유·이용기간 : 준영구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서명)

(사)한국수산물협회장 귀하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준수 및 협조 동의서

당사는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및 세부요령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이행하겠으며,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기관 또는 추천기관에서 당사 할당관세적용 수입품목에 대해 판매실적, 자사제품 가공실적, 보관창고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하며 관련 규정 위반 시 관계기관 고발 등 민·형사상 조치에도 이의 없음을 동의 합니다.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직인, (사용)인감

20 년 월 일

(사)한국수산무역협회장 귀하